

다전공 운영규정

제 정 2025. 02.

개 정 2025. 0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함) 학칙 제30조에서 정한 다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다전공은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을 통칭하는 의미이며, 다전공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이라 함은 학생이 현재 소속된 학과(전공) 이외에 다른 학과(전공)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부전공에는 18학점 이상으로 운영되는 부전공트랙을 포함한다.
2. “융합전공”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부(과)가 학제적인 융합을 통해 구성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연계전공”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부(과)가 서로 연계하여 구성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주관학과(전공)”라 함은 해당 다전공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학과(전공)를 말한다.
5. “책임교수”라 함은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교수를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서 명시한 부전공트랙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글로벌브랜드트랙이라 함은 창업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무 위주의 별도 교육과정을 말하며, 글로벌브랜드트랙에는 주전공 및 타 전공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2. 글로벌역량강화트랙이라 함은 본 대학에 설치된 전공 이외에 실무 위주의 외국어 또는 자격증 취득 등에 필요한 별도 교육과정을 말하며, 글로벌역량강화트랙에는 주전공 및 타 전공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융합부전공(트랙)이라 함은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전공 교육과정을 융복합하여 새롭게 편성한 별도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연계부전공(트랙)이라 함은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거나 또는 동일 단과대학 내 2개 이상의 전공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편성한 별도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전공심화트랙이라 함은 주전공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전공 내에 편성한 별도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 (다전공의 설치) ①다전공은 본 대학에 설치된 모든 학과(전공)에 대하여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전공)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부전공트랙, 융합전공, 연계전공은 해당 전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관학과(전공)에서 [별지 1]의 양식에 의하여 교무처로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교육과정 편성) ①모든 학과에서는 교육과정에 다전공 이수를 위한 학점을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연도별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의한다.

③부전공트랙, 융합전공, 연계전공의 경우에는 학생의 소속학과(전공)의 교과목을 9학점까지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이수신청) ①1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교무처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다전공을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 ②국내외의 타 학교, 연구기관, 학교에서 지정한 국내 외 타 교육기관 등에서 행한 교육, 연구, 실습 등을 이수하는 경우 사전심의 및 허가를 받아 해당 교육과정을 부전공으로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 ③2010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주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다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1학년 2학기 말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다전공 이수신청을 하고 졸업 전까지 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과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연계전공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융합전공은 주전공 또는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거하여 1개 이상의 다전공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⑤마이크로디그리 2개 과정을 18학점 이상 이수하는 경우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다전공의 과정별 이수자 결정은 교육여건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⑦관련 법령에 의해 인원 및 자격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는 타 학부(과) 학생이 다전공으로 이수신청할 수 없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양성학과
2.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
4.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교원양성학과

제6조 (운영 및 지도의 의무) ①다전공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 다전공별로 책임교수를 두되, 주관학과(전공)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겸직할 수 있다.

②다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는 주관학과(전공)의 책임교수를 포함한 학과(전공) 단위에서 진행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책임교수 주관 하에 각 과정의 관련 학과(전공)장이 참여하여 심의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③다전공 주관학과(전공)의 책임교수는 과정 운영에 대한 학사업무를 관장하고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사관련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교수는 관련학과의 전임교수를 관련 업무에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실험실습비) 다전공에서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다전공의 이수) ①부전공은 해당 과정에 대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복수전공(융합전공 또는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포함)은 해당 과정에 대하여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복수전공(융합전공 또는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전공에서의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18학점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다전공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전공에서의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삭제2025.8.28.)

⑤학생이 다전공 이수신청 이전에 신청하려고 하는 해당 다전공 교과목을 일반선택 등으로 먼저 이수한 경우 이를 해당 다전공의 학점으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⑥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다전공 주관학과(전공)에서 지정하는 학과(전공) 졸업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⑦「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의 특별교육과정, 현장실습, 인턴십 등에 따라 복수전공(융합전공 또는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포함)으로 대체이수되는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로 한다. 다만, 부전공의 경우에는 대체이수 학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주관학과(전공)에서는 학생이 이수한 특별교육과정, 현장실습, 인턴

십 등이 해당 다전공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체이수 학점의 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이수변경 및 포기) ①이수 중인 다전공 과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한 과정을 재이수할 수는 없으며, 포기한 다전공 외에 1개 이상의 다전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신청한 다전공 과정을 변경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무처에서 정한 별도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2]에 의한 변경 신청서를 학생 소속 학부(과)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다전공을 포기하거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미 취득한 다전공의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변경된다. 또한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라 다전공으로 대체이수 인정된 학점도 대체이수 인정을 취소한다.

④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신청하여 이수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새로운 주전공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융합전공의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변경된다.

⑤동일한 다전공 과정 내에서 이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교차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변경 후 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⑥다전공 주관학과(전공)의 책임교수는 학생의 학기별 평균성적이 1.5 이하이거나 「학칙」에 의한 징계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신청취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소속 학부(과)장과 협의 후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 직권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다전공의 폐지) ①운영 중인 다전공 과정을 폐지하려고 할 경우 주관학과(전공)에서 [별지 3]의 양식에 의하여 교무처로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해당 다전공의 신청자가 20명 미만이거나 기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해당 다전공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에서 해당 다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

③폐지된 다전공은 현재 이수 중인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대체 인정 교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1조 (졸업) 다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다전공의 이수를 완료할 때까지 본 대학의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기타) 다전공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운영 중인 부전공트랙이 폐지되고 새로운 융합전공 또는 연계전공 또는 부전공트랙 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학생이 기존에 이수한 부전공트랙의 학점을 신설된 과정의 학점으로 이수 인정할 수 있다.

②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전공과목을 부전공은 3학점까지, 복수전공은 6학점까지 학부(과)의 요청을 받아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대체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제3조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부전공 및 복수전공 규정」 및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